

부산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가합424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초석 담당변호사 이정훈, 장권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채상률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

변 론 종 결 2021. 3. 10.

판 결 선 고 2021. 3. 3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 중 1/2 지분에 관하여 특허청 2018. 6. 26. 접수 D로 마친 권리지분의 전부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6. 26. 체결된 지분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 중 1/2 지분에 관하여 특허청 2018. 6. 26. 접수 D로 마친 권리지분의 전부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를 원인으로 한 위 특허권 권리지분의 전부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 C과 다목적 식품 제조기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60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면 C은 원고에게 피고(C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법인 포함) 지분 30%를 이전하고, 수입의 분배는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7. 30.부터 2017. 9. 14.까지 C에게 5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5. C과 이 사건 동업약정을 해소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지급한 위 59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C으로부터 2018. 3. 말까지 100,000,000원, 2018. 4. 말까지 100,000,000원, 2018. 6. 30.까지 390,000,000원을 각 상환받기로 하였고, C이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합219호로 C 및 E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1. 2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라. 한편 C은 다목적 농축 및 추출 장치와 관련된 권리로서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특허권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 6. 26. 피고와 이 사건 특허권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특허권 지분에

관하여 특허청 2018. 6. 26. 접수 D로 피고 명의의 권리지분 전부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지분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C과 피고 사이에 2018. 6. 26. 체결된 이 사건 특허권 지분 양도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지분 이전등록은 말소되어야 한다.

2)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지분 이전등록 말소청구

이 사건 지분 이전등록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지분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을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 지분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특허권 지분 양도행위는 이 사건 동업약정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F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G’이라는 상호로 경영 하고 있는 식품가공기계 제조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체결된 사해행위라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행한 재산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제3자인 수익자에게 그 권리 변동의 영향이 미치는 채권자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54608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을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8. 20.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카단822호로 '이 사건 특허권 지분 양도에 따른 피고 명의의 2018. 6. 26.자 이 사건 지분 이전등록이 사해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특허권 권리이전등록 말소등록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8. 9. 6.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18. 9. 14. 이 사건 특허권의 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적어도 위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8. 9. 14.에는 C의 이 사건 특허권 지분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2020. 2. 2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이전등록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1)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59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C은 적극재산으로 거제시 H 대 985㎡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특허권 지분이 양도된 2018년 당시 위 토지의 가액은 137,998,500원(= 개별공시지가 140,100원 × 985㎡)이고, 위 건물의 가액은 110,000,000원(개별주택가격 기준)으로, 위 적극재산 합계액은 247,998,500원이다.

② 반면 C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59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가 존재한다. 그리고 C이 소유한 위 ①항 기재 부동산에는 통영세무서의 2015. 9. 1.자 압류 등기 및 I의 2020. 8. 20.자 가압류(청구금액 60,950,000원) 등기가 마쳐져 있을 뿐 아니라, 채권최고액 합계 52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이 364,000,000원인 J조합 명의의 공동근저당권 + 채권최고액이 65,000,000원인 J조합 명의의 공동근저당권 + 채권최고액이 100,000,000원인 K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이 마쳐져 있다. 즉 C은 원고 이외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①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이 공시지가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채무초과상태였던 것은 별다른 의문이 없다.

③ 그 외 C은 E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E의 채무초과 여부가 쟁점이 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가단11611 배당이의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8. 21. 기준 E의 적극재산을 523,798,160원, E의 소극재산을 1,331,335,115원으로 인정하여 E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을 보면(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취하로 2021. 1. 1. 확정되었다), E 주식은 실질적으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특허권 지분 전부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청구권에 대하여 C이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

2) 이 사건 이전등록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피대위채권의 존재)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약식명령의 경우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약340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 즉 '피고인은 원고에 대하여 590,000,000원 상당의 금전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주식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자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특허권 지분을 타인의 명의로 이전시켜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6. 대전 유성구 L 소재 M특허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특허권의 지분을 자신의 아내 피고 명의로 전부이전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2019. 4. 15.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이 고지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지분 이전등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강제집행면탈 목적에서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F이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공동대표로 재직하고 있고, 원고와 C 또한 C이 원고에게 대여금 전체를 상환한 이후 이 사건 동업 약정을 해소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와 이 사건 특허권의 명의자가 불일치한 데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이 사건 사업체를 원활하게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지분을 실제로 양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지분 이전등록은 강제집행면탈 목적에서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약식명령의 사실 판단을 배척하고 이 사건 지분 이전 등록이 오로지 이 사건 사업체 운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은 원고에게 차용금 59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2018. 3.말까지, 100,000,000원은 2018. 4.말까지, 2018. 6. 30.까지 390,000,000원을 이자와 함께 각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상환기일까지 차용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없는 상태였다.

② 원고가 2018. 6. 8. C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카단556호로 C 소유의 E 주식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6. 19.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특허권 지분 양도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지분 이전은 그로부터 불과 7일 뒤인 2018. 6. 26.에 진행된 것으로서 매우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③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자와 이 사건 특허권의 명의자가 불일치한 데 따른 번거로움은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에 C 명의를 등재하는 방법으로도 해소가 가능하다. 이는 을 제6호증의 기재, 즉 C이 원고에게 투자금 590,000,000원을 모두 반환하면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F 공동으로 된 사업자등록을 피고 단독 명의로 하되,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동업약정에 기한 원고의 지분 30%의 권리는 모두 C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지분 이전등록이 이루어진 것이고 주장하면서도, C과 피고는 이 사건 지분 이전등록 과정에서 원고나 이 사건 사업체 공동대표인 F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지분 이전등록 이후에도 그 사실을 원고나 F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지분의 이전이 C의 채권자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회수에 불이익만을 가져올 뿐이다.

⑤ 피고와 F 사이에 동업이 이루어진 2017. 9. 6. 이후 이 사건 사업체 운영자와 이 사건 특허권 명의자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바도 없었다.

⑥ 그럼에도 피고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사건 특허권 지분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C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 지분을 이전받은 이후 다목적 식품 제조기 판매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과 같이 공유관계에 있는 특허권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약식명령은 이러한 공유 특허권의 법적 성격을 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권 지분 양도행위 및 이 사건 지분 이전등록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의 공유지분 또한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채권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압류 및 현금화를 하거나(특허법 제99조 제2항),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특허권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허권의 공유지분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이 될 수 없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특허권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지분 이전등록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바,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지분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손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를 원인으로 한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기, 판사 유주현, 판사 박광일

별지

목록

1. 특허등록번호: N
1. 분류기호: A23L 5/00, A47J 27/16, A23L 21/10
1. 발명의 명칭: O
1. 출원연월일: P
1. 공고연월일: Q
1. 특허결정(심결)연월일: 2017년 11월 02일
1. 출원번호: R
1.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7년 04월 03일